# 보건행정학과 운영 내규

[의료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내규 제0002호, 보건행정학과, 043-830-8858]

제　　정 2020. 10. 06.
일부 개정 2020. 10. 23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보건행정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보건행정학과의 학과 운영은 학칙 및 학사규정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.

## 제2장 학과 운영

**제3조(학과장)** ① 학과장은 학과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.
② 학과장은 학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,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다.
③ 학과장은 학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책임이 있으며, 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회의 소집 및 의결권을 가진다.

**제4조(조교)** ① 조교 임용은 학교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
② 조교의 업무는 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무 학사 및 학과 지원업무로 구분한다.

**제5조(학과회의)** ① 학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과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, 학과의 교육목표, 프로그램 학습성과, 교육과정의 설정 및 개정,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
2. 학과의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감독 및 대학본부로의 행·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
3. 학생 지도 및 장학생 선발, 학과 교수, 조교 및 외래강사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
4. 학과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

② 학과 회의는 학과에 소속된 모든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③ 학과 회의의 의장은 학과장으로 한다. 단,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회의는 인증프로그램 책임자가 의장을 할 수 있다.
④ 의결 사안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 단, 찬반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(위원회)** ① 학과는 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본 학과의 위원회는 운영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평가관리위원회,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두며 모든 위원회에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한다. <개정 2020. 10. 23.>

③ 정기 위원회는 매 학기 개최하며, 필요 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.
④ 각 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.

## 제3장 학생 지도

**제7조(학생 지도 및 상담)** ① 학생 지도는 학년별 균등배분제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이루어진다.
②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학과 회의에서 학생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한다.
③ 프로그램 책임자 및 전임교수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이수, 진로와 성적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고, 학생들의 학업과 다양한 활동(교과 및 비교과)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.
④ 학생 상담은 정기 상담과 수시 상담으로 구분되며, 지도교수는 수강지도를 포함한 정기 상담을 매학기 1회 이상 실시한다.
⑤ 학업성취도가 2.5 미만이거나, 학사경고 또는 유급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상담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도하며,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.
⑥ 학생 상담 결과 전문상담센터나 전문상담사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전문상담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.

## 제4장 장학금

**제8조(목적)** 대학의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과에 통보받은 장학금에 대한 수혜대상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9조(선발절차)** ① 학과장은 학교로부터 통보받은 학년별 장학 기 수혜자와 성적우수자 명단을 활용하여 성적우수장학금, 중원리더장학금 등에 대한 수혜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학과회의를 개최한다.
② 학과장은 학과회의를 통해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의한 후 학교에 통보한다.

**제10조(수혜 대상자 선발)** ① 모든 장학금은 수혜기회의 확대를 위해 1인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성적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중원리더장학급 등 수혜대상자는 학과 대표(과/부대표), 학생회 임원, 장학금신청자(소득분위자료)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.

## 제5장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및 학위

**제11조(수업 및 재학연한)** 보건행정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,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칙 등 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**제12조(이수체계 준수)** ① 재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선・후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편입, 휴학,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수 지정된 선・후수체계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담당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후수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하다.

**제13조(졸업)** ①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졸업인증요건을 통과하고,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보건의료정보관리 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 요건 외에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 심사를 추가로 통과하여야한다. 단, 이 요건은 2020학년 신입생부터부터 적용한다.

③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